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05
------	------

2023. 12. 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12월 2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12.2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홍보기획관 최원석)

1. 제안이유

- TBS 출연금 지원 근거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4.1.1.자로 폐지 예정이었으나, TBS 출연 기관 지정해제 신청 후 해제 시까지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폐지 시행일을 유예하는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음.

- 이에 따라 2024년 TBS의 출연기관 지정해제 신청 후 지정해제 시까지 필요한 재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 관련법령
 -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사업(조례 제3조제1항)

-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
-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등 방송사업 전반
- 주한 외국인과 국내 방문 외국인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방송사업
- 시민의 동등한 미디어 참여와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 해외방송과의 국제교류협력
- 재단의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광고·협찬 등 수익 사업
-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다. 출연의 필요성

- TBS 출연기간 지정해제 전 준비기간 내 인건비 및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 급여, 조기희망퇴직수당 등을 출연하여 직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

- 기관 운영을 위한 청사 임차료 등 유지관리비 지원 필요

라. 기관현황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에스플렉스센터)
- 규 모 : 22,155㎡ (약 6,714평)
- 전경 및 위치도



Ⅲ. 검토보고 요지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시가 12월 20일 함께 제출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폐지 시행일을 “2024년 6월 1일”로 유예하도록 제안된 바, 5개월 간의 출연금을 교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음.

나. 출연의 적정성

- 지난 12월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서울시가 제출한대로 미디어

재단 TBS의 출연금 편성 없이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24년도 서울시 본예산에는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서울시는 본 동의안이 의결될 경우 내년도 예산 중 예비비를 일부 사용하여 출연금을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보이며,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정한 바,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 편성이 서울시가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앞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정안 및 출연동의안은 서울시가 충분히 대비하여 의안 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서울시의회에 전가한 채 출연금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음.
- 따라서 예비비 사용을 전제로 출연을 동의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예비비 규정 취지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이라고 정하고 있는 바, 서울시는 예비비 사용 외 여타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람.
- 답변 : 그렇게 하겠음.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6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505
----------	------

제출년월일 : 2023년 12월 2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TBS 출연금 지원 근거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4.1.1.자로 폐지 예정이었으나, TBS 출연기관 지정해제 신청 후 해제시까지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폐지 시행일을 유예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음

○ 조례 개정안 : 시행일 5개월 유예(2024.1.1. → 2024.6.1.)

나. 이에 따라 2024년 TBS의 출연기관 지정해제 신청 후 지정해제 시까지 필요한 재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 관련법령

-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사업 (조례 제3조제1항)

-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
-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등 방송사업 전반
- 주한 외국인과 국내 방문 외국인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방송사업
- 시민의 동등한 미디어 참여와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 해외방송과의 국제교류·협력
- 재단의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광고·협찬 등 수익 사업
-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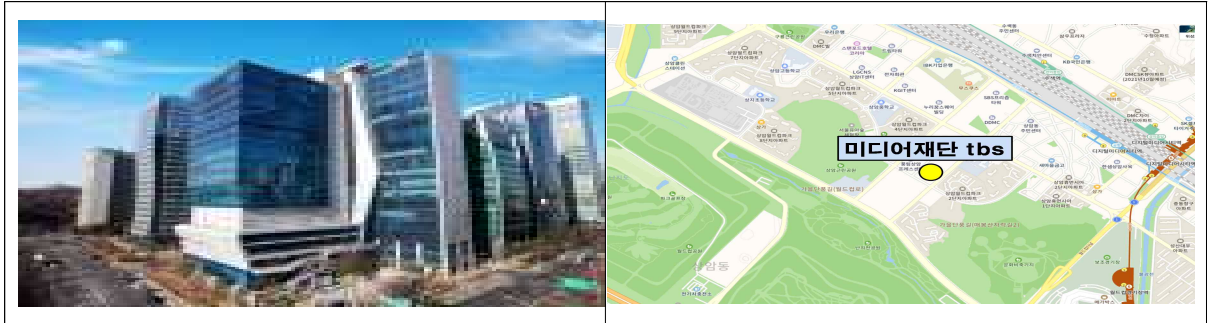
다. 출연금 편성

- 출연 필요성
 - TBS 출연기관 지정해제 신청 후 지정해제 시까지 급여, 퇴직급여, 조기희망퇴직수당 등을 출연
 - 기관 운영을 위한 청사 유지비 등 지원 필요
- 산출내역(안) : 9,297,697천원
 - 인 건 비 : 7,295,528천원(퇴직급여충당금, 조기희망퇴직수당 등)
 - ※ 편성인원 기준 180명, 조기희망퇴직 112명 별도
 - 기본경비 : 664,298천원(4대 보험료)
 - 청사유지비 등 : 1,337,871천원(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등)

라. 기관현황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에스플렉스센터)
- 규 모 : 22,155 m^2 (약 6,714평)

○ 전경 및 위치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예산 반영(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홍보담당관 방송홍보팀 안주희 (☎2133-6442)